

창업지원단 운영규정

제정 2018. 3. 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창업지원단의 구성과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창업지원단은 상지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생 및 교직원의 창업 지원
2. (예비)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3.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및 벤처창업 관련 사업 유치 및 시행
4. 교내 창업관련 정책개발 및 대학평가 지표 대응
5. 그 외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창업지원단은 창업지원부, 한방창업진흥센터를 두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창업지원단에는 단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단장과 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③ 창업지원단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창업지원단장은 산학협력단장을 겸직할 수 있다.

제5조(직원) ① 창업지원단에는 전담직원 및 겸직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직원의 임면, 보수,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.

제6조(비밀유지 의무) 창업지원단 업무에 관련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단장과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② 소속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, 단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창업지원단 운영규정의 제·개정
2. 창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3. 창업지원단의 세입·세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창업지원단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8조(사업비)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고·지자체 지원금
2. 교비
3. 각종 사업비 등

제9조(회계) 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되, 세부사업별로 집행 부서의 센터장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 사항은 본교 규정을 따른다.

부칙(기획예산부-133, 2018.3.13.)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